

의안번호	2206950
의 퇴 인	이종욱 의원
회 답 일	2025. 1. 9.
추계번호	24F6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인공제 인상 －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상속세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인공제 등을 인상함에 따라 상속세는 2026년 1조 9,087억원, 2030년 1조 9,087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9조 5,435억원(연평균 1조 9,08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상속세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상속세 자녀공제 인상 (안 제20조제1항제1호)	-18,807	-18,807	-18,807	-18,807	-18,807	-94,035	-18,807
상속세 미성년자공제 인상 (안 제20조제1항제2호)	-25	-25	-25	-25	-25	-125	-25
상속세 장애인공제 인상 (안 제20조제1항제4호)	-255	-255	-255	-255	-255	-1,275	-255
합 계	-19,087	-19,087	-19,087	-19,087	-19,087	-95,435	-19,087

주: 개정안 부칙(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과 신고기한(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을 감안하여 2026년부터 추계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제1항제1호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 상속세 자녀공제 인상 - (현행) 5천만원 → (개정안) 5억원	
2	안 제20조제1항제2호 (그 밖의 인적공제: 미성년자공제)	○ 상속세 미성년자공제 인상 - (현행) 1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 → (개정안) 2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	
3	안 제20조제1항제4호 (그 밖의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 상속세 장애인공제 인상 - (현행) 1천만원 ×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 → (개정안) 2천만원 ×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0조제1항제1호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	
2	안 제20조제1항제2호 (그 밖의 인적공제: 미성년자공제)	○	
3	안 제20조제1항제4호 (그 밖의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 따라 2025년 7월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을 감안하여 2026년에서 2030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상속세 자녀공제액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향후 상속세 과세대상 가정
 - －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과세가 된 피상속인수의 연평균 비중(4.0%)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13,398명)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향후 피상속인의 자녀수 가정
 - － 최근 5년간 상속재산규모별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인수 가운데 배우자공제 적용자를 차감하여 추정한 상속인을 자녀로 가정
 - 자녀공제액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정시 적용할 실효세율은 기초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하며, 최근 5년간 상속

재산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향후 상속세 미성년자공제액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상속세 과세대상과 미성년자공제액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정시 적용할 실효세율은 위 자녀공제 가정과 동일
 -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가정
 - 최근 5년간 상속재산규모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에서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연평균 비율(0.3%)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향후 상속세 장애인공제액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상속세 과세대상과 장애인공제액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정시 적용할 실효세율은 위 자녀공제 가정과 동일
 -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가정
 - 최근 5년간 상속재산규모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에서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연평균 비율(2.7%)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자녀공제 인상의 세수효과

(1) 제도개요

- 상속세 자녀공제는 상속을 받은 자녀 수에 따른 공제
 - 자녀공제액: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원 → (개정안) 자녀 1인당 5억원

(2) 추계방법

- 자녀공제 인상의 세수효과는 자녀공제 인상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감소액 추계
 - 상속재산규모별 피상속인의 1인당 자녀수에 따른 자녀공제액 인상을 반영한 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세수효과를 추정한 후 전체 과세대상자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계

(가)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연평균 336,365명) 중 과세가 된 피상속인수의 연평균 비중(4.0%)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13,398명)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향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도 일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연평균 비중(4.0%) 적용

[표 2]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피상속인수	과세 피상속인수	과세미달 피상속인수
2019년	345,290 (100.0)	8,357 (2.4)	336,933 (97.6)
2020년	351,648 (100.0)	10,181 (2.9)	341,467 (97.1)
2021년	344,184 (100.0)	12,749 (3.7)	331,435 (96.3)
2022년	348,159 (100.0)	15,760 (4.5)	332,399 (95.5)
2023년	292,545 (100.0)	19,944 (6.8)	272,601 (93.2)
연평균인원 / 연평균 비중 인원 등	336,365 (100.0)	13,398 (4.0)	322,967 (96.0)

주: ()는 전체 피상속인수 대비 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상속재산 규모별 자녀수별 피상속인 비중

- 상속재산 규모별 자녀수별 피상속인수 비율은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자녀수별 피상속인수 비율(평균)을 살펴보면, 자녀 1명 11.4%, 자녀 10명 초과는 0.4%를 나타내고 있음

[표 3]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자녀수별 피상속인 평균 비중

(단위: %)

구분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자녀 4명	자녀 5명	자녀 6명	자녀 7명	자녀 8명	자녀 9명	자녀 10명	자녀 10명 초과
10억원 이하	25.0	20.1	20.8	16.1	9.7	4.6	2.1	0.7	0.3	0.2	0.4
20억원 이하	13.4	31.3	25.8	15.1	7.8	3.5	0.7	0.3	0.3	0.3	0.2
30억원 이하	10.5	34.3	27.2	14.9	7.0	3.4	1.2	0.7	0.3	0.2	0.3
40억원 이하	9.4	34.6	27.0	15.2	7.1	3.5	1.5	0.7	0.4	0.3	0.3
50억원 이하	9.8	33.6	29.2	14.4	7.0	2.7	1.7	0.8	0.3	0.4	0.2
100억원 이하	9.2	31.5	27.1	14.1	8.0	3.1	2.9	2.5	1.0	0.5	0.0
500억원 이하	6.0	19.4	19.4	42.5	2.0	3.2	5.8	1.8	0.0	0.0	0.0
500억원 초과	7.9	19.8	28.8	16.7	7.1	4.7	5.4	4.4	1.4	2.2	1.5
평균	11.4	28.1	25.7	18.6	7.0	3.6	2.7	1.5	0.5	0.5	0.4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의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은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하였으며,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실효세율은 10억원 이하 10.8%에서 500억원 초과 43.1%로 나타남

[표 4]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 추이

(단위: 억원, %)

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실효세율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10억원 이하	417,955	40,507	9.7	518,653	56,094	10.8	640,338	70,788	11.1	805,131	94,658	11.8	10,748	1,144	10.6	10.8
20억원 이하	15,097	2,520	16.7	18,163	3,087	17.0	24,060	4,186	17.4	29,312	5,134	17.5	35,192	6,122	17.4	17.2
30억원 이하	12,122	2,744	22.6	13,089	3,019	23.1	17,512	4,071	23.2	21,315	5,105	24.0	28,858	6,754	23.4	23.3
40억원 이하	8,052	2,140	26.6	8,405	2,200	26.2	11,538	3,112	27.0	14,398	3,926	27.3	21,632	5,903	27.3	26.9
50억원 이하	5,017	1,425	28.4	5,841	1,725	29.5	8,400	2,446	29.1	10,558	3,199	30.3	15,424	4,622	30.0	29.5
100억원 이하	15,421	5,155	33.4	17,290	5,792	33.5	21,070	7,375	35.0	26,975	9,323	34.6	33,984	11,735	34.5	34.2
500억원 이하	18,835	7,083	37.6	26,036	10,485	40.3	33,592	13,727	40.9	38,323	15,618	40.8	51,370	20,647	40.2	40.0
500억원 초과	16,782	5,854	34.9	33,103	15,128	45.7	31,267	12,834	41.0	314,285	148,957	47.4	142,281	65,870	46.3	43.1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상속재산규모별 자녀공제액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2026년 기준 1조 8,807억원으로 나타남
 - 2026년 기준 각 상속재산 규모별 자녀공제 조정액에 실효세율(표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수감소액은 10억원 이하 702억원에서 500억원 초과 137억원 등 총 1조 8,807억원으로 추계됨

(3) 추계결과

-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2026년 1조 8,807억원, 2030년 1조 8,807억원 등 5년간 총 9조 4,035억원(연평균 1조 8,80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최근 5년간 상속세 과세대상 및 자녀공제액 적용대상자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적용대상 등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5] 향후 5년간 상속세 자녀공제액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상속세 감소액	18,807	18,807	18,807	18,807	18,807	94,035	18,807

나. 미성년공제 인상의 세수효과

(1) 제도개요

- 상속세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포함)에 대한 공제
 - 미성년자공제액: (현행) 1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 →
(개정안) 2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

(2) 추계방법

□ 상속세 미성년자공제 인상의 세수효과는 미성년자공제 인상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감소액을 추계

- 상속재산규모별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를 추정한 후 1인당 공제 인상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정한 후 전체 과세대상자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계

(가)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자 추정

□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에서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한 피상속인수를 미성년자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연평균 비율(0.3%)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6]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A)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B)	미성년자 적용대상 피상속인 비율(B/A)
2019년	8,357	27	0.3%
2020년	10,181	33	0.3%
2021년	12,749	46	0.4%
2022년	15,760	52	0.3%
2023년	19,944	67	0.3%
연평균비율	-	-	0.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대상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는 2026년 이후 45명으로 가정하여 추계

- 위에서 추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13,398명에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비율(0.3%)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피상속인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비율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비율은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비율을 살펴보면, 10억원 이하 구간 8.4%에서 500억원 이하 4.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7]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및 비율
(단위: 명, %)

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비율
10억원 이하	1 (3.7)	2 (6.1)	5 (10.9)	8 (15.4)	4 (6.0)	8.4
20억원 이하	15 (55.6)	12 (36.4)	19 (41.3)	22 (42.3)	26 (38.8)	42.9
30억원 이하	3 (11.1)	8 (24.2)	8 (17.4)	11 (21.2)	14 (20.9)	19.0
50억원 이하	5 (18.5)	4 (12.1)	7 (15.2)	8 (15.4)	11 (16.4)	15.5
100억원 이하	2 (7.4)	6 (18.2)	5 (10.9)	2 (3.8)	6 (9.0)	9.9
500억원 이하	1 (3.7)	1 (3.0)	2 (4.3)	1 (1.9)	6 (9.0)	4.4
합계	27 (100.0)	33 (100.0)	46 (100.0)	52 (100.0)	66 (100.0)	100.0

주: 1. 상속재산규모 500억 초과는 2023년 1건뿐으로 특이치 제외
 2. ()는 전체 미성년자공제 적용 피상속인 수 가운데 과세가액 규모별 미성년자공제 적용 피상속인수 비율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미성년자공제액 인상액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 상속세 미성년자공제액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2026년 기준 25억원으로 나타남

- 미성년자공제 인상(2천만원)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우선 최근 5년간 상속재산규모별 미성년자공제 1인당 추정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 최근 5년간 상속재산규모별 미성년자공제 1인당 연평균액은 상속재산 10억원 이하 1.6억원에서 500억원 이하 2.5억원으로 나타남

[표 8]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미성년자공제 1인당 공제액 추정

(단위: 명, 억원)

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합계
2019	과상추산 (A)	1	15	3	5	2	1	27
	공제액 (B)	0.3	31	8	14	4	2	59.3
	1인당 공제액 (B/A)	0.3	2.1	2.7	2.8	2.0	2.0	—
2020	과상추산 (A)	2	12	8	4	6	1	33
	공제액 (B)	4	34	20	8	16	3	85
	1인당 공제액 (B/A)	2.0	2.8	2.5	2.0	2.7	3.0	—
2021	과상추산 (A)	5	19	8	7	5	2	46
	공제액 (B)	8	42	12	18	9	3	92
	1인당 공제액 (B/A)	1.6	2.2	1.5	2.6	1.8	1.5	—
2022	과상추산 (A)	8	22	11	8	2	1	52
	공제액 (B)	6.3	43	29	16	6	2	102.3
	1인당 공제액 (B/A)	0.8	2.0	2.6	2.0	3.0	2.0	—
2023	과상추산 (A)	4	26	14	11	6	6	66
	공제액 (B)	5	59	28	27	16	13	147
	1인당 공제액 (B/A)	1.3	2.3	2.0	2.4	2.6	2.2	—
1인당 공제액 연평균액		1.6	2.5	2.5	2.6	2.6	2.5	—

주: 상속재산규모 500억 초과는 2023년 1건(2.4억원)건 뿐으로 특이치 제외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위에서 추정된 미성년자공제 1인당 공제액에 인상분(2천만원-1천만원)을 반영하여 산정한 1인당 공제액에 실효세율(표4)을 곱하여 추정된 공제액에 전체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자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계
 - 2026년 기준 미성년자공제액 인상에 따라 상속재산규모 10억원 이하 1억원에서 500억원 이하 2억원 등 총 25억원으로 세수감소 효과 발생

(3) 추계결과

- 상속세 미성년자공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2026년 25억원, 2030년 25억원 등 5년간 총 125억원(연평균 2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최근 5년간 상속세 과세대상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자의 연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9] 향후 5년간 상속세 미성년자공제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상속세 감소액	25	25	25	25	25	125	25

다. 장애인공제 인상의 세수효과

(1) 제도개요

- 상속세 장애인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한 공제
 - 장애인공제액: (현행) 1천만원 ×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의 연수 → (개정안) 2천만원 ×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의 연수

(2) 추계방법

- 상속세 장애인공제 인상의 세수효과는 장애인공제 인상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감소액을 추계
 - 상속재산규모별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를 추정한 후 1인당 공제

인상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정한 후 전체 과세대상자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계

(가) 장애인공제 적용대상자 추정

-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에서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한 피상속인수를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로 가정
 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연평균 비
 율(2.7%)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10]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A)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B)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 비율(B/A)
2019년	8,357	213	2.5%
2020년	10,181	261	2.6%
2021년	12,749	338	2.7%
2022년	15,760	420	2.7%
2023년	19,944	595	3.0%
연평균비율	-	-	2.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대상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는 2026년 이후 359명으로 가
 정하여 추계
 - 위에서 추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13,398명에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비율(2.7%)
 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피상속인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비율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비율은 최근 5년간 상
 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비율을 살펴보
 면, 10억원 이하 구간 14.5%에서 500억원 이하 2.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11]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및 비율

(단위: 명, %)

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비율
10억원 이하	20 (9.4)	46 (17.8)	50 (14.8)	68 (15.7)	84 (14.1)	14.5
20억원 이하	90 (42.3)	108 (41.9)	157 (46.4)	204 (48.6)	254 (42.8)	44.4
30억원 이하	52 (24.4)	47 (18.2)	71 (21.0)	64 (15.2)	116 (19.5)	19.7
50억원 이하	26 (12.2)	36 (14.0)	34 (10.1)	46 (11.0)	86 (14.5)	12.3
100억원 이하	17 (8.0)	15 (5.8)	23 (6.8)	24 (5.7)	37 (6.2)	6.5
500억원 이하	8 (3.8)	6 (2.3)	3 (0.9)	14 (3.3)	17 (2.9)	2.6
합계	213 (100.0)	258 (100.0)	338 (100.0)	420 (100.0)	594 (100.0)	100.0

주: 1. 상속재산규모 500억 초과는 2020년 3건 및 2023년 1건뿐으로 특이치 제외

2. ()는 전체 장애인공제 적용 피상속인 수 가운데 과세가액 규모별 장애인공제 적용 피상속인수 비율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장애인공제액 인상액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 상속세 장애인공제액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2026년 기준 억원으로 나타남

- 장애인공제 인상(2천만원)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우선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장애인공제 1인당 추정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 최근 5년간 상속재산규모별 장애인공제 1인당 연평균액은 상속재산 10억원 이하 2.9억원에서 500억원 이하 3.5억원으로 나타남

[표 12]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장애인공제 1인당 공제액 추정

(단위: 명, 억원)

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합계
2019	과상추산 (A)	20	90	52	26	17	8	213
	공제액 (B)	61	320	176	98	83	21	759
	1인당 공제액 (B/A)	3.1	3.6	3.4	3.8	4.9	2.6	—
2020	과상추산 (A)	46	108	47	36	15	6	258
	공제액 (B)	134	352	159	147	51	25	868
	1인당 공제액 (B/A)	2.9	3.3	3.4	4.1	3.4	4.2	—
2021	과상추산 (A)	50	157	71	34	23	3	338
	공제액 (B)	134	465	248	126	112	11	1,096
	1인당 공제액 (B/A)	2.7	3.0	3.5	3.7	4.9	3.7	—
2022	과상추산 (A)	68	204	64	46	24	14	420
	공제액 (B)	188	634	192	159	108	41	1,322
	1인당 공제액 (B/A)	2.8	3.1	3.0	3.5	4.5	2.9	—
2023	과상추산 (A)	84	254	116	86	37	17	594
	공제액 (B)	257	845	396	298	128	68	1,991
	1인당 공제액 (B/A)	3.1	3.3	3.4	3.5	3.5	4.0	—
1인당 공제액 연평균액		2.9	3.2	3.3	3.7	4.2	3.5	—

주: 상속재산규모 500억 초과는 2020년 3건(10억원) 및 2023년 1건(2억원)만으로 특이치 제외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위에서 추정한 장애인공제 1인당 공제액에 인상분(2천만원-1천만원)을 반영하여 산정한 1인당 공제액에 실효세율(표4)을 곱하여 추정한 공제액에 전체

장애인공제 적용대상자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계

- 2026년 기준 장애인공제액 인상에 따라 상속재산규모 10억원 이하 16억원에서 500억원 이하 13억원 등 총 255억원으로 세수감소 효과 발생

(3) 추계결과

- 상속세 장애인공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2026년 255억원, 2030년 255억원 등 5년간 총 1,275억원(연평균 25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최근 5년간 상속세 과세대상 및 장애인공제 적용대상자의 연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13] 향후 5년간 상속세 미성년자공제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상속세 감소액	255	255	255	255	255	1,275	255

4. 추계결과

- 상속세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인상함에 따라 상속세는 2026년 1조 9,087억원, 2030년 1조 9,087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9조 5,435억원(연평균 1조 9,08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4] 상속세 자녀공제 등 인상에 따른 상속세 감소액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자녀공제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액	18,807	18,807	18,807	18,807	18,807	94,035	18,807
미성년자공제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액	25	25	25	25	25	125	25
장애인공제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액	255	255	255	255	255	1,275	255
합 계	19,087	19,087	19,087	19,087	19,087	95,435	19,087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